

#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견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4. 8

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26-2 박준영외 769명

나. 회부일자 : 1992. 4. 17

다. 상정일자

- 1992. 4. 22
- 1992. 5. 13
- 1992. 5. 20
- 1992. 6. 26

2. 전문위원의 경과보고 : 별첨

3. 의견서 : 별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동의안 처리 - 발의자 : 이현택위원

-내 용 : 지난 6월26일 본 위원회시 조용근위원의 동의대로 동사부지 위치선정은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이므로 대상지별 장·단점만 발췌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자는 의견임

-표결결과 : 재석위원 11명(전원찬성)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이현택위원의 동의대로 작성된 의견서를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

# 경과보고서

## 1. 구평동사 부지선정 청원

가. 청원인 : 사하구 구평동 126-2번지 박준영외 769명

나. 소개의원 : 김형호의원

다. 접수일자 : '92. 4. 8

라. 회부일자 : '92. 4. 17

마. 상정일자 : '92. 4. 22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바. 심사안건 :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에관한공청회의견

## 2. 청원요지

현 구평동사는 항반도로 개설로 철거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'91년 3월부터 신축동사 부지를 물색해 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곳이 외진곳이라는 등 동사신축 예정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 대립으로 해서 현재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사를 다수 주민이 편리한 곳에 신축해 달라는 청원임.

## 3. 청원처리 경과

가. '92. 5. 20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

찬반진술인의 의견청취와 위원간의 질의, 답변을 토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의견서를 채택하려다 조용근위원의 동의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후 의견서를 작성하자는 동의가 채택되었고

나. '92. 6. 1 김희정위원외 9명이 집행기관의 예정부지와 청원인들의 잠정적인 부지를 현장조사후 구평동 회의실에 들러 동장으로 부터 그간의 부지선정경위를 청취한 바 있었으며

다. 그 후 구평동 72-3번지 남광정밀 공장 부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 위원장, 간사, 청원소개의원, 전문위원과 사무과직원 등 현장 조사와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

라. '92. 6. 26 조용근위원외 10명이 의견서 재작성을 위한 위원간의 의견조정과정에서 동사부지에 대한 장·단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.

## 4. 의견서(별첨참조)

# 의견서

## 1. 구평동사 부지 선정 청원

- 청원인 : 사하구 구평동 126-2번지 박준영외 769명
- 소개의원 : 김형호 의원
- 접수일시 : '92. 4. 8
- 청원상정일시 : '92. 4.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## 2. 청원요지

현 구평동사는 항만도로 개설로 철거가 불가피하여 '91. 3월부터 신축동사 부지를 물색해 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위치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못짓고 있으므로 동사를 다수주민이 편리한 곳에 신축해 달라는 청원임

## 3. 청원 처리 경과

가. 1992. 4.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의한 결과 동사위치 선정은 청원인과 현 동사 주변 주민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동사위치 선정 청원처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 
나. 1992. 5. 13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찬반진술인의 의견과 위원간의 질의답변 및 집행기관의 위치선정 경위등을 청취하였으며  
다. 1992. 5. 13 공청회 결과 집행기관이 지정한 위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므로

4. 1992. 6. 1 공청회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및 구평동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사위치선정은 먼 장래와 다수주민의 주거 여건을 감안한 중심권이고 주민편의 위주 장소로 선정하여 조속히 동사를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.